

제35대 총무원장선거
총무 안내

불기2561(2017)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1. 공고문	4
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6
3. 총무원장 선거 업무의 이해	8
4.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주의 사항	15
5.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 응답	18
6. 부록	
1) 총무원장 선거 관련 양식	22
2) 선거법	27
3) 교구총회법	53
4) 선거관리위원회법	60

공 고

중헌 제52조 내지 제53조 및 선거법에 의거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일시

- . 불기2561(2017)년 10월 12일(음 8월 23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 선거장소(투표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

①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총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총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이 없다.

1. 총무원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3.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기타 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61(2017)년 9월 18일(월) ~ 9월 20일(수), 오전 9시 ~ 오후 5시

※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총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9월 17일(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총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 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적등본 1부(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나 본적지 변경 등에 의

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신원조회서 1부
- 경력 증빙 서류 1부
- 종법 준수 각서(소정양식) 1부
- 투·개표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종책 공약 내용
- 반명함판 사진 2매

□ 후보자 등록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선거인단 선출기간: 불기2561(2017)년 9월 27일(수) ~ 10월 1일(일)

□ 선거인 자격

- ①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주지 포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 자격이 없다.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예외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실상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6.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8.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인 명부 열람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문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02)2011-1865, FAX(02)733-8286

불기2561(2017)년 9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 훈**

I.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중앙중회에서 선출한 9인(비구니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중앙중회에서 선출
- 자격: 승납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의 승려
- 임기 : 5년, 비상임직
- 겸직금지: 원로회의의원, 중앙중회의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중무기관 상근직 종무원, 교구본사 주지 겸직 금지
- 신분보장: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중앙중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함

2) 교구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교구중회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자격: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
- 임기: 5년, 비상임직
- 겸직금지: 원로회의의원, 중앙중회의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겸직
금지
- 신분보장: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 또는 교구중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함

2.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모든 교구(24개 교구)
- 교구선거관리위원회 : 당해 교구 내의 선거

3.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역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역할

- 직무: 총무원장선거 및 중앙중회의의원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중법으로 정하는 사무
- 총무원장선거 또는 중앙중회의의원선거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교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총무원 기타 중무기관에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중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 요구를 받은 중무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중무원 등을 교구에 파견할 수 있다.
- 사무관장 : 중앙중회 사무처

2)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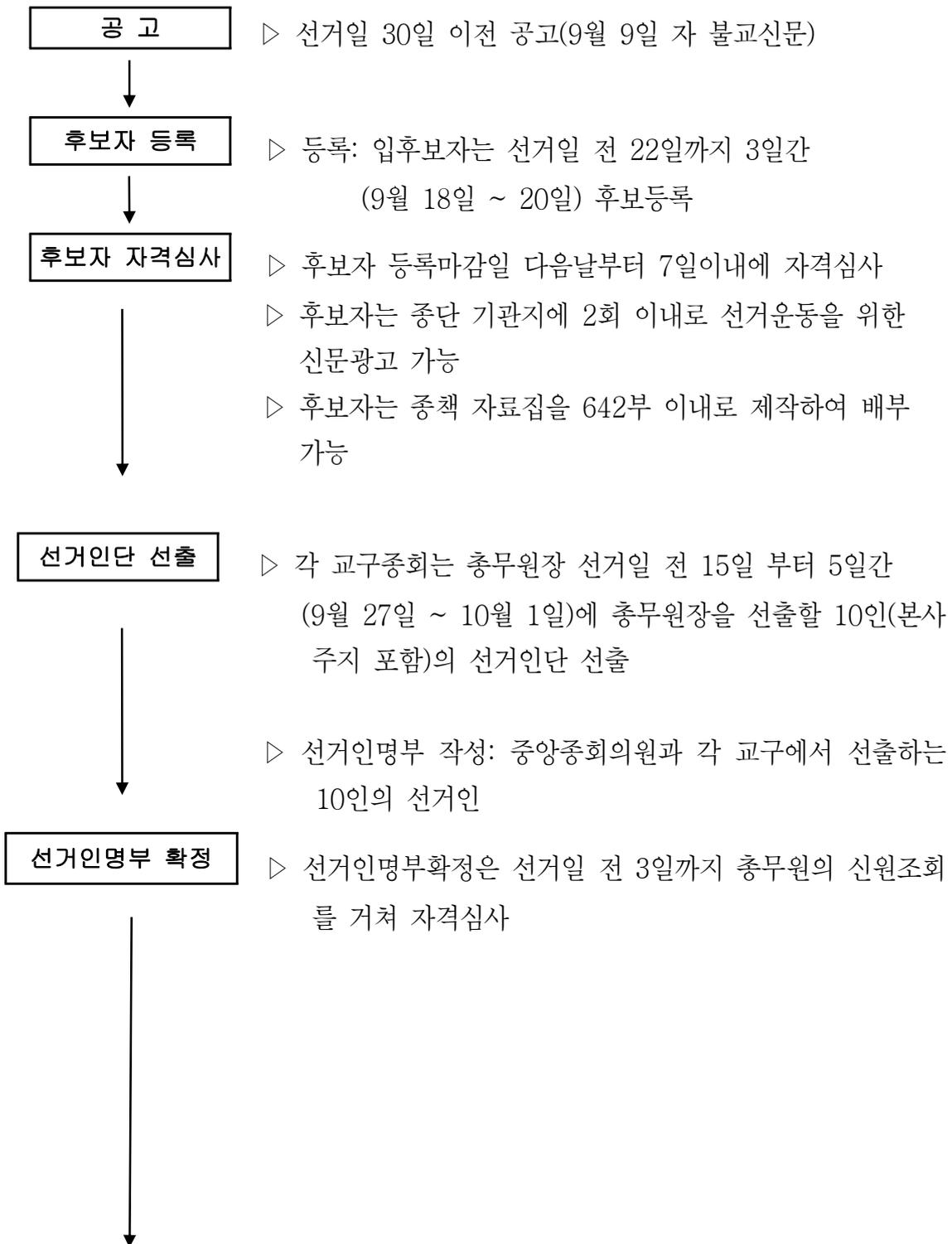
- 직무 : 교구중회의원선거에 관한 사무, 기타 중법으로 정하는 사무
- 그 직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관장 : 당해 교구본사

4.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치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이에 불응하거나 위반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이에 응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II. 총무원장 선거 업무의 이해

1. 총무원장선거 절차



투·개표

- ▷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
- ▷ 투·개표 참관인(각 후보자별 1인 이내)

2차투표

- ▷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 실시

당선인 결정

- ▷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2차투표시

-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동표일 경우 승낙순, 연령순으로 결정)

당선인 공고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되면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증 교부

2. 총무원장선거 업무

1)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 개요

- 선거일: 2017년 10월 12일(목) 오후 1시 ~ 3시
- 투표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불교문화예술공연장
- 후보자등록기간: 2017년 9월 18일(월) ~ 9월 20일(수)
- 선거인단 선출기간: 2017년 9월 27일(수) ~ 10월 1일(일)
- 후보자 자격심사: 2017년 9월 25일(월) 오후 2시 예정
- 선거운동기간: 2017년 9월 26일(화) ~ 10월 11일(수) 예정
- 선거인명부 확정일: 2017년 10월 9일(월) 오후 2시 예정

2) 선거권

가) 선거권

- 재임 중인 제16대 중앙종회의원
-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된 10인의 선거인(본사 주지 포함)

나)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전 6년 이내에(2011년 1월 이후)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 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연도(2017년)에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함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6.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8.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3) 피선거권

가) 피선거권이 있는 자: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중앙중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중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2007년 1월 이후)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 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연도(2017년)에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함
-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기타 중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환계하지 아니하고 속퇴하였다가 재입산한 자
 2. 구속계를 수지하지 아니한 자
 3.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5.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암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 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살인·강도·절도·강간·간통)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징계에 의하여 종무원의 직위를 상실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1. 해당 교역직 종무원 임용 자격에 따르는 법계를 품서받지 아니한 자
- 12. 종헌 중범에 의하여 종무직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방식

- 교구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교구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방식 결정
- 결정된 선출방식으로 선출한 후 선출된 선거인에 대하여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결정

나)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보고

- 교구총회의장(교구본사주지)은 교구총회에서 선출된 10인의 선거인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출 즉시 보고
- 총무원장 선거인단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출될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각 교구총회는 예비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여 3인을 추가로 선출하도록 함

교구총회 구성원 자격

- 재임 중인 본사주지, 부주지, 총무국장, 기획국장, 교무국장, 재무국장, 사회국장, 포교국장, 호법국장
- 재임 중인 말사주지
- 직선직 교구총회의원

5) 선거인명부

- 총무원장 선거인명부는 재임 중인 제16대 중앙총회의원과 교구총회에서 선출된 10인의 선거인으로 작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된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대하여 총무원 신원조회를 거쳐 선거일 전 3일까지 명부를 확정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만 효력을 가짐

6)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장소

- 2017년 9월 18일(월) ~ 20일(수), 오전 9시 ~ 오후 5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나) 기호결정

- 입후보자의 기호는 후보등록 순서에 따라 결정
- 후보자 등록 접수 시간 이전에 도착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등록순서를 정함

다)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적등본 1부(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나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신원조회서 1부(실효된 형 포함)
- 경력 증빙 서류 1부
- 종법 준수 각서(소정양식) 1부
- 투개표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종책 공약 내용
- 반명함판 사진 2매

7) 후보자 자격심사 및 선거인명부 확정

가) 후보자 자격심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심사하여야 함

나) 선거인명부 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임중인 중앙중회의원과 교구중회에서 선출된 10인의 선거인에 대하여 총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 선거일 전 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야 함

8) 당선인 결정 등

가) 당선인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선인 결정
-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총무원장 선거결과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투표 실시
2차투표 결과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으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유효투표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승률이 높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승률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나) 당선인 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 이를 즉시 공지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함

다) 당선무효 사유

-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인이 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당선인이 종무원법에 따라 교역직 종무원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심판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라) 재선거

-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 선거의 전부무효 심판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재선거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선거를 처음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선거소청

- 총무원장 선거는 선거 및 당선 효력에 관하여 소청할 수 없다.

Ⅲ.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주의 사항

1. 투표방법

- 선거인은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승려증 및 기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사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아 투표를 한다.

2. 투개표 참관인

- 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선임한 자만이 투개표장 안에서 투개표의 상황을 참관할 수 있으며,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투개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참관인은 참관인석에서 참관하며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에게 업무방해 및 선거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 참관인의 이의사항을 보전할 집기(사진·비디오카메라만 허용)를 소지할 수 있으나, 선거 투표진행 사항을 촬영할 수는 없고 이의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보존 신청을 얻은 후 촬영할 수 있다.

3. 후보자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등록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등록 대리인들이 접수 시간 전에 도착한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그 순서를 정한다.
- 후보자가 자격심사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으로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여야 하며, 자격 박탈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후보자에 이를 즉시 통보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이 결정은 효력이 있다.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거 운동

■ 사전 선거운동(후보자 자격심사 확정일까지)

가. 허용되는 행위

-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선거 참여 독려
 - 후보자 자격에 관한 의견개진
-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 선거사무소·연설풋소 등의 물색행위
 - 선거운동용 차량, 종책자료집, 연설문 등 준비(제작)행위
 -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교육
- ③ 통상적인 종무활동
 - 대중 법회, 강연(단,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출마여부의 의사표시는 선거법위반)

나. 금지되는 행위

- 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출마여부에 대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 행위(성명서, 대중연설, 광고 등)
- ② 종책자료집 배포행위

※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 선거운동(후보자 자격심사 확정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 선거운동의 정의

-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나. 금지되는 행위

- ①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 ② 선거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 집회의 개최

- ③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 ④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 ⑤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 ⑥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 ⑦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의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
- ⑧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 ⑨ 종단 기관지에 2회를 초과하여 신문광고하는 행위

5. 선거 감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의 선거법 및 기타 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공식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식모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1인 이상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종단의 모든 공식모임은 선거관리위원의 참관을 거부할 수 없다.

IV.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응답

♣ 총무원장 선거권 일반

▣ 총무원장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 각 교구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교구종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인 선출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합의된 선출방식으로 선거인을 선출한 후 선출된 선거인에 대하여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각 교구에서 선거인단을 선출은 언제 합니까?

☞ 총무원장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 선출합니다. 제35대 총무원장선거는 9월 27일(수)부터 10월 1일(일) 사이에 교구본사별로 교구종회를 개최하여 선출해야 합니다. 만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닌 때 교구종회를 개최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면 선거인단 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정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교구종회는 교구종회 개회 전까지 재임 중인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 선거인단의 자격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선거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선거인단의 자격 규정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이상의 승려 중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입니다. 다만,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사설사암이나 미관장법인 소속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일 전 6

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정하였습니다.

■ 선거인단 자격 중 분담금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선거일 전 6년 이내에(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예: 1년 분담금이 1,000만원인 경우 체납분담금의 합산액이 2,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6년 이내에 2개 사찰에서 주지로 재임 중인 경우 2개 사찰의 체납분담금액을 합산합니다.

■ 현재 호법부나 호계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선거권이 있습니까?

☞ 선거일 이전에 호계원의 징계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 총무원장선거 피선거권 일반

■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원장 피선거권은 승납 30년 이상, 세납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가 기본 자격입니다. 또한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중앙총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각급 중정기관 위원장을 역임하였거나, 교구본사 주지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총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총회의원으로 6년 이상 재직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총무원장선거 입후보에 제한은 없습니까?

☞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예: 1년 분담금이 1,000만원인 경우 체납분담금의 합산액이 2,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와 종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 총무원장선거 입후보 등록기간과 서류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입후보 등록기간은 9월 18일(월)부터 9월 20일(수)까지 3일간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입후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우편은 등록기간 이내에 사무처에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 접수시 먼저 사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원장선거 입후보자 홍보자료 제출은 어떻게 합니까?

☞ 종책자료집은 32면 이내의 인쇄물을 642부까지 배부할 수 있습니다. 불교신문 광고는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로 일반신문 5단통 분량의 후보자 신상명세, 종책을 2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종책자료집은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제작수량, 제작비용, 배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문광고는 후보자 자격심사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신고하여야합니다.

♣ 선거 및 당선 일반

▣ 본인의 선거권 확정 유무는 어떻게 확인 합니까?

☞ 10월 9일(월)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02-2011-1865

▣ 선거인명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만이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 당일 본인임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합니까?

☞ 선거 당일 선거인명부와 본인을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바, 승려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소지하고 제시하여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의 구체적인 기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투표 방식이나 유효표, 무효표 사례 등은 선거 당일 선거장소에 게시되며, 종단 홈페이지 총무자료실 선거업무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 록

I. 총무원장 선거 관련 양식

II. 관련 법규

1. 총무원장 선거 관련 양식

[등록신청서]

제35대 총무원장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

법명(성명)		은사 법명		사진 (반명합판)
주민등록번호		승적 번호		
본 적				
주민등록주소				
현 거 주 지	(우편번호 -)			
재 적 교 구	제 교구본사	거주교구사찰		
소 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p>불기2561(2017)년 9월 일</p> <p>위 신청인 : (인)</p> <p>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하</p> <p>* 첨부서류: 1. 수행이력서 1부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제적등본 각 1부 (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나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4. 신원조회서 1부 5. 경력 증빙 서류 6. 종법 준수 각서(소정양식) 1부 7.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8. 종책 공약 내용 9. 반명합판 사진 2매</p>				

[종법준수각서]

“선거인 명부 확정 각서”

본인은 선거인 명부가 선거일 3일전까지 확정됨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이후에는 선거인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으며, 사회법에 제소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불기2561(2017)년 9월 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 ○ (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하

“선거결과 승복 각서”

본인은 제35대 총무원장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이 승복
하며, 또한 사회법에 제소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불기2561(2017)년 9월 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 ○ (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하

[투표용지]

총무원장선거 투표용지

제35대 총무원장선거 투표용지

위원장

번호	법명(성명)	기 표 란
1		
2		
3		
4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I. 관련법규

선거법

불기 2556(2012)년 9월 19일 제정
불기 2556(2012)년 9월 27일 공포
불기 2557(2013)년 3월 20일 개정
불기 2557(2013)년 4월 1일 공포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불기 2558(2014)년 7월 16일 공포
불기 2559(2015)년 9월 08일 개정
불기 2559(2015)년 9월 17일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단의 각종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승려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선거사무 협조) 각급 종무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종단은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청정한 수행가풍과 승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총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중앙총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총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중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호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명선거위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위원단을 둔다.

② 공명선거위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후보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별 7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명선거위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고,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공명선거위원단의 구성, 활동방법, 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후보자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이 법에 의한 선거에 입후보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개시) ① 총무원장의 임기는 전임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중앙중회의원과 교구중회의원(이하 본 조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중회 해산, 천재지변 등으로 전체 의원이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된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 (선거권) ① 재임 중인 중앙중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중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은 총무원장의 선거권이 있다.

②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중앙중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불기 2557(2013). 03. 20 개정]

4.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려는 그 교구에서 선거하는 교구중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1. 당해 교구의 재적승인 비구

2. 당해 교구의 본·말사 주지

3.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불기 2557(2013). 03. 20 개정]

4. 당해 교구본사의 암자 감원

5.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구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가.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자

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

제13조 (피선거권) ①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1. 중앙중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2.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경력
3.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4. 중앙중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경력
5.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②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는 중앙중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법계 중덕(정덕) 이상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는 승려는 당해 교구중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4조 (승납산정의 기준) 피선거권자의 승납은 수계의 월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1월 1일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되지 아니한 자
2.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예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4.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5.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
6.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다른 교구의 중앙중회의원 또는 교구중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교구의 방장 또는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참여한 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10.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6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총무원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예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해 연도 부과된 사찰분담금 체납액은 가산하지 아니한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3. 호계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기타 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7조 (선거구)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는 당해교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18조 (중앙종회의 의원정수) 중앙종회의 의원정수는 교구 직선직 의원 51인, 직능 대표 의원 20인과 비구니 의원 10인을 합하여 81인으로 하며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의원 정수는 별표 1-1과 같다.

제19조 (교구종회의 구성)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으로 구성한다.[불기2559(2015).9.8 개정]

제20조 (투표구) ① 총무원장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투표구를 둔다.

②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선거와 교구종회의원선거는 당해 교구에 투표구를 둔다.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1조 (선거기간) ① 총무원장선거와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종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2일로 한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22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본종의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

③ 임기만료로 실시되는 중앙중회의원 선거와 교구중회의원 선거는 같은 날에 실시한다.

④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불기2557(2013). 03. 20 본항 신설]

제23조 (궐위 등에 인한 선거일) ① 총무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한다.

② 중앙중회의원과 교구중회의원의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매년 2월과 8월 넷째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일이 안거기간인 때에는 안거 해제일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불기2557(2013). 03. 2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본종의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

제5장 선거인명부

제24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총무원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중회의원선거와 교구중회의원선거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제12조에 따라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 후 7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불기2557(2013). 03. 20 본항 신설]

③ 선거인명부에는 교구, 사찰, 법명, 성명, 승려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⑤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서면으로 투표구를 정하여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각호의 앞선 순서를 우선하여 투표구를 확정한다.

⑦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2부 작성하고, 즉시 그 중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

한다.

제25조 (명부작성 방해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명부열람)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7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소정양식의 이의신청서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해당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일까지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9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후보자

제30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로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종무원 등의 입후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32조 (등록 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종무원법에 따라 교역직종무원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② 후보자가 직선직 또는 직능대표 의원에 2 이상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후보자 자격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제7장 선거운동

제36조 (선거운동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종무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1.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행위
2. 이 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 집회의 개최
3.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4.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5.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6.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37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할 수 있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제38조 (선거운동 금지) 본 법의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 (종책자료집)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종책 및 정견, 공약, 원력, 경력 등을 게재한 32면 이내의 인쇄물(이하 “종책자료집”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종책자료집의 수량은 해당 선거 선거권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③ 총무원장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 수량·작성 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후보자가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 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신문광고) ① 총무원장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종단 기관지로 국한한다. 종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신문광고의 규격, 횟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규격: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

2. 광고횟수: 총 2회 이내

3. 광고위치: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

③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광고원고를 광고게재 마감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① 중앙종무기관(총무원·교육원·포교원)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종무원,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말사주지 제외) 및 일반직종무원, 및<삭제>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②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42조 (종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앙종무기관 소속 종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종도들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장을 하는 행위

제43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제45조 (후보자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출생지·신분·학력·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선거 비용 등

제46조 (선거 경비) ①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정책자료집, 신문광고, 토론회) 일부를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② 중앙중회의원 및 교구중회의원 선거에 관한 기본경비(정책자료집, 토론회) 일부를 교구본사 예산으로 계상하여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다.[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제47조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중회의원 및 교구중회의원 선거기간 중에 각 후보자가 참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 (선거의 감독)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사무원 1인 이상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모임은 그 참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을 위하여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을 선거관리사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중앙종무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견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감독에 관한 일부 사항을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이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50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범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투표소의 설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의 투표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원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2. 1호 이외의 선거: 당해 교구본사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교구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좌석·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투표사무 종사원을 둔다.

⑥ 투표사무 종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 중에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의 종무원 중에서 각 위촉한다.

제52조 (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범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범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기호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범명과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기재순위는 후보자 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후보자 등록 사무의 개시 전 2인 이상의 후보자(후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후보자 등록 사무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그 순서를 정한다.

④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법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3조 (투표용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 (투표안내문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 등 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 안내문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 (투표시간) 각급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하게 한다.

제56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57조 (투표용지의 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참관 하에 승려증(승려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종단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말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절차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투표소에 비치해 두어야 하고 보관하고 있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신체의 이상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표소 안에 1인 이상을 동반 보조하게 하여 투표할 수 없다.

⑦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58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는 “⊗”표가 각인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9조 (투표 참관) ①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투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본인을 참관인으로 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 현황과 투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투표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참관인이 투표 간섭 또는 부정 투표 기타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는 투표 현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 60조 (투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유지)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사무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투표 참관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종무원 및 투표 사무 종사원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표지를 왼쪽 가슴에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격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다.

④ 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는 선거관리위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는 그 전에

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표시를 할 수 없다.

제 61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범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질문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는 즉시 당해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투표 참관인 등의 참여하에 공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그 봉투 앞면에 사유를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한다.

제 62조 (투표록의 작성 등)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종료 후 투표관리상황, 투표상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당해 선거관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 투표용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견한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 63조 (개표관리) 개표사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 64조 (개표사무원)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 사무원을 둔다.

제 65조 (개표의 참관) 각 선거의 후보자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66조 (투표함의 개함) ①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

유를 기재한다.

② 당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 67조 (개표의 진행)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8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가 상위한 것
2.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한 것
4. 어느 란에 표시한 것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문자 또는 그 외 기호로 표시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 표시란에만 2 이상 기표한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인주(印朱)로 오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다만 교부 된 투표용지와 기표 된 투표용지의 개수가 동일하여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제 69조 (개표관람) 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관람인을 적당한 수로 제한할 수 있다.

제 70조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한다.

- 제 71조 (개표록의 작성 등) 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감독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선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 72조 (투표지·개표록 등의 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지,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지는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송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심판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11장 당선인

- 제 73조 (총무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총무원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원로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투표의 결과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때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승률이 높은 후보자를, 승률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 74조 (중앙중회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중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선출 정수 이내의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 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중앙중회의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75조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①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전 3일에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③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76조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결정) 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선거일 전 3일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한다.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제 77조 (직능대표선출위원회) ①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6인과 재임 중인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의원은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직능대표선출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代 의 중앙종회 개원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선출한다.

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78조 (교구종회의원의 결정·광고·통지) ① 교구종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교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교구중회의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 이내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9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 80조 (당선인의 재결정)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심판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 81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선거의 전부무효 심판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총무원장 재선거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선거를 처음부터 실시하여야 한다.[불기2557(2013). 03. 20 개정]

제 82조 (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무원장선거 및 중앙중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중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3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 당해 교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교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 84조 (보궐선거) 중앙중회의원이 궐위되어 중앙중회 의장으로부터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보궐선거 기일에 이 법이 정한 선거절차에 따른 선거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 85조 (선거소청)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② 당선인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다만, 총무원장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법명(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제 86조 (증거조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소속된 종무기관의 종무원 또는 다른 종무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종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종무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7조 (소청에 대한 결정) ① 제8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고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 88조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소청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호계원은 제1항의 상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9조 (선거 무효의 결정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심호계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제14장 벌칙

제90조 (매수 및 이해유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2. 재산상의 이익 및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제9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9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2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여비·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

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3조 (선거의 자유 방해)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철폐·감금한 자

2.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제 94조 (투표의 비밀침해) ①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5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6조 (투표함 무단 개함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과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제적 또는 5년 이상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7조 (선거사무 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철폐·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선거관리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8조 (사위등재·허위 날인)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종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 99조 (사위투표)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100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종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101조 (허위사실 공표)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102조 (후보자 비방)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104조 (의무위반) 제41조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105조 (가중처벌) ①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 포함)을 제한한다.

② 일체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③ 제2항에서 부과된 벌금 전액을 납부 할 때까지 각급 선거의 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포함)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할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이 법 공포로 총무원장선거법, 중앙총회의원선거법, 교구총회의원선거법은 각 폐기한다.

부칙[불기2557(2013). 03.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불기2558(2014)년 6월 25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기준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2014년 9월 30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제15조제3호 및 제16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예외)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불기2559(2015)년 9월 8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교구 직선직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의석 배정표

교구	본사명	의석수(명)	비고	교구	본사명	의석수(명)	비고
1	직할교구	4		14	범어사	2	
2	용주사	2		15	통도사	2	
3	신흥사	2		16	고운사	2	
4	월정사	2		17	금산사	2	
5	법주사	2		18	백양사	2	
6	마곡사	2		19	화엄사	2	
7	수덕사	2		21	송광사	2	
8	직지사	2		22	대흥사	2	
9	동화사	2		23	관음사	2	
10	은혜사	2		24	선운사	2	
11	불국사	2		25	봉선사	2	
12	해인사	3			비구니	10	
13	쌍계사	2		계		61	

<별표 1-2>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의석 배정표

직 능	의원수(명)	비고
울 원	2	
선 원	2	
강 원	2	
교 육	2	
포 교	2	
사 회	2	
복 지	2	
문 화	2	
법 제	2	
행 정	2	
계	20	

교구총회법

불기 2538(1994)년 10월 25일 제정
불기 2538(1994)년 10월 26일 공포
불기 2542(1998)년 9월 8일 개정
불기 2542(1998)년 9월 16일 공포
불기 2558(2014)년 8월 12일 개정
불기 2558(2014)년 9월 03일 공포
불기 2559(2015)년 9월 08일 개정
불기 2559(2015)년 9월 17일 공포

제 1 장 총 칙

제1조 (입법근거) 이 법은 중헌 제88조에 의하여 교구총회의 권한, 조직 및 의사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① 교구총회는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직선의원의 선출은 교구총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3조 (임기) ① 직선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직무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교구총회의원의 궐위 시 이를 승계한 의원의 임기는 궐위된 교구총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겸직금지)① 삭제[불기2559(2015). 9. 8]

② 삭제[불기2559(2015). 9. 8]

제5조 (의장단) 교구총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의 의장단을 둔다.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교구총회의 의장은 교구본사의 주지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교구총회의 의장은 교구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구총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 유고시는 부의장이 승랍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부의장 모두 유고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7조 (부의장의 임기) ①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부의장의 선출) 부의장은 교구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직선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9조 (등록) 직선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구본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교구총회의 경비는 교구본사 예산에 계상한다.

제 2 장 권 한

제11조 (심의 의결 사항) 교구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2. 중앙총회에 건의할 종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총회에 건의할 사항
4.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
7. 본·말사에서 부의한 사항
8. 중앙종무기관에 건의할 사항
9. 중앙종무기관에서 시달한 사항
10.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종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① 교구종무기관의 종무원은 교구총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행정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교구종무기관의 종무원은 교구총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③ 교구본사 종무원은 종무행정의 처리 상황을 정기 교구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류 제출 요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교구본사나 단위사찰의 주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① 교구총회는 총무원장 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에 총무원장을 선출할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불기 2542(1998). 9. 8 개정]

②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교구총회 의장은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단의 범명,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으로 선출될 수 없다.[불기 2558(2014)년 8월 12일 신설]

제15조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임기) 총무원장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는 당해 총무원장 선거에 한한다.

제 3 장 소집과 회기

제16조 (교구총회 최초 소집) 임기만료 및 해산에 따라 새로 구성된 교구총회의 최초 회의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구본사주지가 소집한다.

제17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임사회) ① 선거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사회는 교구본사주지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기) 정기회의 회기는 5일로 하고, 임사회 회의는 3일로 한다. 다만 교구총회는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의 종류) 교구총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말사(암자 포함)가 50개 이상인 교구에는 교구총회의 일상적 심의 의결기관으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부주지, 각 국장과 10인의 말사 주지, 10인의 직선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구본사주지로 하며,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감독, 조정한다.

④ 상임위원회 부의장은 본회의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결위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 사항) 상임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 의결한

다.

1. 교구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사전 심의
2. 중앙총회에 건의할 사항의 사전 심의 및 성안
3. 각종 교구 규칙 제정
4. 교구 예결산의 심의
5. 교구 중무의 심의와 조정
6. 본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8.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9. 본말사에서 부의한 사항의 심의 의결
10. 기타 교구의 중요사항

제23조 (상임위원회 회의) 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임위원의 임기) 말사주지로서 선출된 10인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5조 (특별위원회) 교구총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및 사건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 절 개의와 의사일정

제26조 (개의) 교구총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의사정족수) 교구총회 본회의는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은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0조 (의안의 발의) ① 본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장이나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에 그 안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회기계속의 원칙)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처리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제3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제33조 (회의록) ① 교구총회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 중지, 산회 년월일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4. 부의안건과 그 내용
5. 의장의 보고
6. 상임위원회의 보고
7. 위원회의 보고
8. 결의사항
9. 기타 교구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회의록에는 의장단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2 절 청 원

제34조 (청원서의 제출) ① 교구총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구총회위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법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 (청원의 심사 처리) 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제36조 (의원의 사직) 교구총회는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 (의원의 퇴직) 교구총회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어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38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교구총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피심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피심 의원은 제3항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징 계

제39조 (징계의 사유)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구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4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의 제명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절 사무관리

제41조 (교구총회의 사무관리) 교구총회의 사무는 교구본사에서 관장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불기2558(2014)년 8월 12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불기2559(2015)년 9월 8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불기 2528(1994)년 10월 10일 제정
불기 2538(1994)년 10월 12일 공포
불기 2542(1998)년 11월 16일 개정·공포
불기 2553(2009)년 11월 9일 개정
불기 2553(2009)년 11월 26일 공포
불기 2559(2015)년 9월 08일 개정
불기 2559(2015)년 9월 17일 공포

제1조 (명칭)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82조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교구선거관리위원회 5인

제4조 (관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구에 걸쳐서 관할권이 있고,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교구내의 선거에 한하여 관할권이 있다.

제5조 (직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중앙종회의원 및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종법으로 정하는 사무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
2. 기타 종법으로 정하는 사무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또는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무원 등을 교구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직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선출 및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9인의 위원(비구니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종회가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자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승랍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제8조 (겸직금지) 원로회의의원, 중앙중회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인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임기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중헌, 중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중앙중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불기 2553(2009). 11. 9 본항 신설]

④ 교구선거관리위원이 중헌, 중법을 위배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해당 교구중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교구선거관리위원회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불기 2553(2009). 11. 9 본항 신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불기 2553(2009). 11. 9 본항 신설]

제10조 (신분보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 중앙중회 또는 해당 교구중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불기 2553(2009). 11. 9 본항 신설]

제11조 (위원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중회에서 선출한다. [불기 2559(2015). 9. 8. 개정]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회의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수행중에 선거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반이 중대한 때에는 이를 호법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사무 협조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 기타 종무기관에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종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종무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 관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중앙총회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당해 교구본사 주지가 관장한다.

제17조 (선거 소청 및 결정) ① 총무원장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를 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재선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할 선거명과 재선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중앙총회의원 및 교구총회의원 선거의 경우 즉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실시 결정을 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 하여야 한다. [불기 2542(1998). 11. 16 본조 신설]

제 17조의 3 (선거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급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하고, 중앙총회의원 및 교구총회의원 선거의 경우 즉시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연기 결정을 한 때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불기 2542(1998). 11. 16 본조 신설]

제18조 (규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시 최초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회의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제3조 이 법 시행시 최초의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이 법 제17조의2과 제17조의3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불기 2542(1998). 11. 16 본조 신설]

부 칙 [불기 2553(2009). 11. 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9(2015). 9.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